

부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626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62614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18 선고 2020가소938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22. 7. 14.

판결 선고 2022. 8.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18. 선고 2020가소938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취·등록세 상당액 부당이득 3,500,000원 및 차량운행대금 1,15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차량운행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취·등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차량운행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피고가 소유하던 (차량번호 1 생략) 관광버스(이하 '이 사건 관광버스'라고 한다)를 운행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1. 10. 경 차량운행대금 합계 1,150,000원(= 충북 구인사행 차량운행대금 700,000원 + 경주 불국사행 차량운행대금 220,000원 + 양산 C행 차량운행대금 2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운행대금 1,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충북 구인사행, 경주 불국사행, 양산 C행 관광버스를 운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운행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관광버스를 운행한 것으로 이 부분 차량운행대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임금 또는 차량운행대금에 대한 10%를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아갈 수 있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임금 또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0. 24. 고소인의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차량운행대금 채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 5,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위 피의자신문절차에서 원고에게 지급할 이 부분 차량운행대금 액수 등에 대하여 다투면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부분 차량운행대금은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는 그 후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소26971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원고가 항소하여 위 사건의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4나1109호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충북 구인사행 차량운행대금 700,000원, 경주 불국사행 차량운행대금 220,000원, 양산 C행 차량운행대금 230,000원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항소심 법원은 미지급 임금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대법원 2014다7368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 29. 상고를 기각한 점, ③ 원고는 2012. 6. 26. 자신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전세버스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1. 11.분 임금 1,400,000원 및 2011. 12.분 임금 1,400,000원 합계 2,8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검찰청 동부지청은 위에서 본 피의자신문절차 등의 조사를 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13. 3. 22.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 ④ 피고는 2012. 1. 28.경에 이르러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관광버스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적어도 2011. 12. 31.까지는 이 사건 관광버스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운행대금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병준

판사안혜미

판사허성민